

의안번호	2221443
의 퇴 인	김도읍 의원
회 답 일	2026. 10. 8.
추 계 번호	26A484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1항(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40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 대상 미취업자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	재량규정
2	안 제30조의2 신설(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장기재직지원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 해당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1. 주택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2. 해당 지역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장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 4. 그 밖에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재직기간, 소득수준,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및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제1항(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0조의2 신설(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2. 상세 사유

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안 제12조제1항)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인 고용 대상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40세로 상향조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35세 이상 40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고용장려금 지원의 경우 그 취지를 반영한 재정사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으로, 해당 법률에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 기준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과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¹⁾이 있으나, 이는 해당 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²⁾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고용 지원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세부사업(일반회계, 1043-301)의 내역사업임

대상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음

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30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재직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청년근로자가 해당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차료, 사업장 출퇴근, 교통비 등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재직기간별 청년 근로자의 수, 이들의 주택 임차 수요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에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의 대상과 지원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주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